

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



국토교통부

국 토 교 통 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세버스 내 위법행위 단속 등 관리·감독 철저 요청

1. 최근 대규모 집회에 이용된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탑승자 파악이 어려워 신속한 방역조치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.
 2. 이와 관련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는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탑승객 명단을 관리하도록 지자체에 행정명령 발령을 권고 하였습니다.
 3. 한편, 전세버스 내에서의 노래와 춤 등 소란행위, 좌석이탈 행위 등은 감염병 확산에 큰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지자체에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 처벌하는 등 관리·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, 전세버스사업자단체는 관할 지자체의 관리·감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* 춤과 노래 등 소란행위: 사업일부정지 30~90일 또는 과징금 180~540만원
 - * 안전띠 미착용 및 좌석 이탈행위: 사업일부정지 30~90일 또는 과징금 180~540만원
4. 아울러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각 시·도조합은 운송사업자가 차량 운행 전후 소독,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재차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, 운송사업자는 운송계약 체결 시 이용객에게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감염 예방 및 차단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* (이용자 방역수칙) 이동 중·휴게소 정차 시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, 차 내에서 음주 및 춤과 노래 등의 소란행위 금지, 불필요한 대화나 신체 접촉 등 최대한 자제 등

끝.

국토교통부장관

수신자 강원도지사(교통과장), 경기도지사(버스정책과장), 경상남도지사(교통정책과장), 광주광역시장(대중교통과장), 대구광역시장(버스운영과장), 대전광역시장(운송주차과장), 서울특별시장(버스정책과장), 세종특별자치시장(교통과장), 울산광역시장(버스타็กซี่과장), 인천광역시장(택시화물과장), 전라남도지사(도로교통과장), 전라북도지사(도로교통과장), 제주특별자치도지사(대중교통과장), 충청남도지사(교통정책과장), 충청북도지사(교통정책과장), 경상북도지사(교통정책과장), 부산광역시장(버스운영과장),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, 각 17개 시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주무관 행정사무관 버스정책과장 전결 2020. 8. 26.

협조자

시행 버스정책과-532 접수
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어진동) / <http://www.molit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3829 팩스번호 044-201-5582 / 1234nn@molit.go.kr / 대국민 공개

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.